



안보전략논단

[2024년 12월호]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6(24-12) | 2024. 12. 2

초급장교(ROTC) 지원율 급감 대책의 오류와 배트나(BATNA)
김성진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한 현실
이성춘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최고의 군인복지정책이다
최규상

초급장교(ROTC) 지원율 급감 대책의 오류와 배트나(BATNA)

김 성 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 김정은의 갖은 도발 책동은 일상화된 지 오래고, 우리 軍의 인력 수급 및 운영체계는 흔들린 지 오래다. 미국의 11월 대선은 ‘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러-우·이-하 사태는 혼돈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국내외적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움에도 국민의 양극화·분열상은 극단으로 치닫고,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장교 지원율은 대증적 처방으로 해소될 기미가 없다. 정치적 포퓰리즘은 병사들의 만족도는 높였으나 초급간부들의 지원율은 급감시켰고, 중간간부들의 전역률을 급증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병사보다 간부의 자살 비율이 높고, 직업 만족도가 저하하는 현상 등에서 복무환경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하였다.

물론 초급장교에 대한 지원율 급감 현상이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병사들 중심의 혜택·인권 개선에 집중하면서 같은

연령대이지만, 훨씬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장부 계층이 배제되면서 현장에서의 박탈·배신·절망감이 한층 더 커졌다.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7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교를 지원하는 이유가 명예심(25.6%)·월급(22.5%)·직업성(18.6%)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이 2022년 발표한 ‘병 급여 인상이 초급장교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이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한다. 병사들의 금전적 혜택이 커질수록 장교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져서다.

KIDA에서 지난 1월 발표한 ‘ROTC와 ROTC 출신 현역장교들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 병사들 위주의 월급 인상·병영문화 개선으로 초급장교의 장점이 사라졌고, △ 같은 연령대이면서 더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장교들을 배제했기에 직무수행 동기가 사라졌다”라고 분석했다.

국방부에서는 ‘초급장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을 불문하고 임관과 동시에 같은 임무(역할)를 수행함을 고려할 때, 생도·후보생 과정에서 현격히 차이나는 1인당 양성비용 문제는 우선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의 낮은 체감지수는 크게 네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군의 대책이 단편·단기 처방에만 치우쳐 있는 데다, 약속한 예산은 매년 삭감되어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둘째, ‘복무기간 단축·월급 200만 원 시대’는 병사들만 대상으로 했을 뿐, 초급장부(MZ 세대)를 배제했기에 부정적 기류가 더 커졌다.

셋째, 초급장교들의 기본 능력·역량이 전투력 발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투자 및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법을 바꾸기 어렵다”고만 내세우는 악순환’의 변화 조짐은 없다.

넷째, MZ 세대인 초급장교와 부모들이 공정·형평성, 가시적 보상의 제도화, 생애주기 보장을 요구하지만, ‘답정너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능력·사기에 승패가 좌우됨을 직시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환경(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① 현행 복무기간(28개월)은 24개월로 환원돼야 한다. ROTC는 창설 이후 1967년까지는 24개월이었으나, 1.21 청와대 기습사태(1968) 이후 4개월을 늘린 이후 지금까지 환원되지 않고 있다. ② 초급장교의 월급수준은 민간 중견기업의 50~60%에 그친다. 최소한 중위(Meso) 수준은 되어야 하며, 각종 수당·당직근무비, 시간외수당 등의 상한선은 확대하되 정책·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③ 모든 장교는 임관과 동시에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어느 출신이든 상위계급 진출 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돼야 하며, 생애주기 전반은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전직(轉職) 교육지원 기관의 대상에는 단기복무장교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④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며,

초급장교들의 기본 권한만 통제(제한)하는 데 그치는 미봉책이 사라져야 한다.

정부·軍의 접근 인식과 태도에서도 두 가지는 선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외형·실적에 고민하기보다 ‘창끝 전투력 발휘와 안정적인 유지’에 대한 진정성과 절실함이 필요하다. △ 초급장교·부모 세대가 생애주기를 군에 투자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정책·제도에 대한 무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 위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누구나 장교로 임관하면, 임무(역할)의 특성상 ‘직업장교’로 예우해야 하며, 정책·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군 지휘부부터 “투자 없이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기초적인 경제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즉 ROTC(재학) 과정-복무단계에서 필요한 금전적 보상체계, 복무기간 환원 및 복무여건·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수직·위계·권위적 군대문화가 상식이 통하는 수준으로 전환돼야 하며, 보직·진급심사는 출신에 상관없이 형평·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면, 개인의 생애주기에 도움이 된다”는 제도·정서적 신뢰(Trust)가 조성되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과 ‘군사력에 기반한 외교 우위 정책’을 내세우며 ‘America First’를 몰아붙이고 있다. 지금껏 공들인 안보정책(전략)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트럼프 앞의 등불 신세’가 됐고, 북한 김정은의 도발은 무한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할 때 내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은 국가보위와 국익추구에 최악의 패착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군사적 안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군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K-방산을 내세우며 과학화 군대라고 과신해도, 창끝 전투력을 지휘할 핵심 계층이 군을 회피하고 이들의 사기와 능력(역량)이 약화되면 어떠한 수준의 분쟁에도 승패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군의 정책·제도적 보장을 믿을 수 있어야만 중간간부들의 엑소더스(대규모 이탈) 현상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초급장교 지원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한 현실

이 성 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북한학 박사)

북한 김정은은 공공연하게 핵무력 강화노선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핵무기의 사용 여부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신의 영역으로 방치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핵능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핵사용 위협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뭇 괴리가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은 핵을 “직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방어용, 협상용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순수하게 방어용이나 협상용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북한이 어떠한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지 되묻고 싶다. 핵무기는 전략무기이자 절대적이고 강력한 무기이다. 즉 대량살상무기이면서 고도의 정치적 무기이기에 재래식 무기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군사력은 역대 최강으로 강해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1년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40~60개의 핵무기를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북한은 SLBM을 탑재할 3,000톤급의 잠수함을 이미 완성했고, 핵잠수함도 건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 특히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와 다탄두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 화성-12·14·15·17·18형과 2024년 10월 31일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화성-19형의 확보이다. 또한 핵사용에 대한 법제화 및 제도적인 뒷받침도 완료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관계를 두 국가 및 교전국 관계로 천명하면서 걸림돌이 되었던 한 민족, 한 국가의 문제도 국제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적대국과 주적에 대해서는 실전에서 어떠한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뒷받침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용 위협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전 발표를 통해 북한은 타국으로부터의 핵억제력 확보를

위해 보유한다고 기만했지만, 2013년 자위적 핵보유법을 통해서도 미국과 남한을 향한 핵사용 의지를 밝혔다. 2022년 4월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 사용으로 승리하겠다는 것이며, 대미용, 협상용 핵 논리에서 훨씬 벗어난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군 창건 90주년 행사에서 핵의 기본사명은 억제이지만, 필요하면 ‘억제 이외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핵사용 전략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어 6월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2일째 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 수정 등의 중요 문건을 작성하였다. 실제 사용이 용이한 전술 핵을 실전 배치하여 핵사용 전략의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11월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마지막 날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며,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의 기본사항인 전쟁억제력을 벗어나, 제2의 사명 즉 유사시 선제공격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요건, 즉 생존이나 체제의 위협 또는 김정은의 의도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1인 지배체제라는 특수성 및 김정은의 예측불허의 사고방식은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의 상당한 위협요소이다. 또한 핵무기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오판되어 진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국가의 전략문화가 핵사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에 있는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24년 11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정된 핵교리를 승인하였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용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보복 조치로 여겨진다. 지난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핵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시사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러시아 및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핵교리 승인 문제가 김정은 체제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점점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최고의 군인복지정책이다

최 규 상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국방AI사업팀장)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북한군의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폭풍군단을 포함한 1만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보급품을 수령하는 동영상과 쿠르스크 지역 참전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자칫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연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면서 남북한 간 철도와 도로망을 끊어 버리고 방벽을 세우는 한편, 오물풍선 및 GPS 교란 공격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소규모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고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은 매일 매일을 긴장상태에서 생활하게 된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군사적 긴장상태의 고조는, 곧 군복 입은 군인에게 부여된 직무수행을 위해 개인적인 것들을 희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군대와 군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우리 군은 신분과 계급이 서로 다른 군인이 위계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부 간부와 병, 직업으로서 군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히 중·장기복무 직업군인은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며, 극한의 근무조건과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장기복무 직업군인 중 상당수는 신체적인 손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하게 되지만, 이들이 전역 후 겪게 되는 실상은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이들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심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하는 중·장기복무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심신장애로 인한 빈곤으로 결국 사회적 약자로 전환될 것이다.

일정기간 조직에서 몸담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는 조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조직의 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복무 전역 또는 퇴역군인에 대한 국가의 충분하지 못한 보호와 지원은, 현역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군의 제대군인정책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창업지원이나 의료지원, 군인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와 각 군의 제대군인지원처 등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이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역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도 더 높은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즉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최고의 군인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 교육지원, 주택 융자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복무의지를 고취시켜 미군이 세계 최고의 전력과 최강의 군대 위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의 제대군인 처우개선과 제대군인정책은 몇 가지 관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제대군인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강화, 기술교육 및 재교육 지원, 그리고 안정된 주거 지원 등이다. 또한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쌓은 경험과 기술을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둘째, 심리적 지원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군 복무 기간 중 극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은 군인들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대군인들에게 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심신장애로 전역 또는 퇴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국가보훈지정 기준의 현실화 및 국가보훈지정의 노력도 절실하다.

셋째, 제대군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 제대군인이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들이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제대 또는 퇴역한 제대군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에 임할 것이며, 우수인력이 군에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